

**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**

대 통 령 윤 석 열 인

2024년 1월 16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**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
(법무부 소관)**

이 상 민

●법률 제20004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“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·품질 단속 사무”를 각각 “경영 사무, 목재제품 규격·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·품질 단속 사무”를 “보호 사무, 목재제품 규격·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8호의2 중 “영업비밀의 취득·사용·누설 및 디자인권·전용실시권 침해”를 “영업비밀 침해, 디자인·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·전용실시권 침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1호 중 “「병역법」에 규정된 병역 기피·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”를 “「병역법」 제86조, 제87조,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(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관한 단속 사무”로 한다.

제6조제5호나목 중 “사무”를 “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5호 중 “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”을 “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, 나목 및 다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8호 중 “「병역법」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·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”를 “「병역법」 제86조, 제87조,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(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범죄”로 한다.

35의2.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

가. 「특허법」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

나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)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

다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·제2항,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

라. 「디자인보호법」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

마. 「실용신안법」에 규정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·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,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·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며,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·감면 목적의 도망·행불,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, 병역기피·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·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